

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 안 경 위

- 가. 발 의 자: 문성호 의원 외 25명
- 나. 의안번호: 제2404호
- 다. 발의일자: 2025. 2. 3.
- 라. 회부일자: 2025. 2. 5.

2. 제 안 사 유

-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이 종결되면서 늘어나는 교육, 행사와 지역 축제에 비례하여 폐현수막이 증가하고 있으며, 특히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이후에 더욱 증가함.

이에 서울시 내 공공기관의 회의실, 동아리방, 다용도실 등 다양한 교육, 행사와 지역 축제가 개최되는 공간에 탄소중립과 관련하여 폐현수막 줄이기 정책으로 전자 현수막 게시대 설치에 대해 필요성이 제기됨

3. 주 요 내 용

- 가. 공공기관에서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현수막을 줄이기 위해 전자 현수막 게시대 설치 권장 사항 추가(안 제24조의3).

4. 참 고 사 항

가. 관계법령: 「환경정책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다. 기타: 신·구조문 대비표

5. 검토 의견

가. 개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폐현수막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자 현수막 게시대 설치 및 예산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것임.

<본 일부개정조례안 신·구조문 대비표>

현행	개정안
<신설>	제24조의3(전자현수막게시대 설치) ① 시장은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전자현수막(현수막 모양의 디지털 광고물인 간판을 말한다)게시대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「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에 따른 시의 본청 및 직속기관, 사업소, 합의제 행정기관 2. 서울특별시의회 3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직영기업, 공사·공단 4. 「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출자·출연기관 5.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선정한 수탁기관 중 시장이 전자현수막게시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자현수막게시대의 적극적인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나. 검토의견

- 안 제24조의3은 시장이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전자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도록 노력하고 관련 시책 수립·시행 및 예산 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것으로 폐현수막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조례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, 실질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임.

다만, 동 조례 제정 목적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전기·화석연료 등의 에너지 사용을 줄여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인바, 전기를 사용하는 전자 현수막 게시대 설치와는 다소 상충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.

또한, 폐현수막과 전자 현수막 게시대의 제조·운영 및 폐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탄소의 총량에 관한 연구사례도 부족한 실정임.

- 한편, 「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」는 옥외광고물의 표시·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28조제6항에 구청장이 폐현수막에 대한 친환경적 재활용 정책을 추진할 때 시장이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또한, 「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」는 폐기물 발생량 감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11조에 시민 또는 시민단체가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 활동을 추진할 때 시장이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- 따라서 폐현수막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본 조례안의 취지에 미뤄 동 조례 보다는 「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」나 「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」를 개정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.